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업장가입자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포함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84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업장가입자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포함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6
다. 관계 기관 의견	9

I. 개요

1. 한정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84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30.

(3) 회 부 일 : 2026. 3.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최소 재직기간(10년 등) 후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가입되지 않고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장임의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10년)만 채운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수령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배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노후 소득공백 우려가 큼.

반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여 수급 가능한 대상자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신청이나 조건 없이 해당 직역연금에 당연가입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연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당연 가입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업장가입자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포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로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한다) 제8조¹⁾에 따른 연계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호).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금지급의 연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 1. 28.>

④ 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반납금의 납부, 반납금의 반환 시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없는 자 가. ~ 다. (생략) 라. <u>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u> <u><신설></u> 2. ~ 5.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노령연금 수급권자</u> 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2. ~ 5.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8조제1항에서는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연금연계법」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만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²⁾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취업한 경우 ① 「연금연계법」에 따른 연계를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거나, ② 그 연계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임의가입자³⁾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③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3가지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임.

- 참고로, 1998년 12월 법률 제5623호로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등

2)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지역연계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 6. 7.>

3)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수급권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되었는데,⁴⁾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정부가 1998년 5월 8일 제출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070호)에서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사업장가입자에서 배제한 조치가 ‘공적연금 제도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았고,⁵⁾

2009년 2월 법률 제9431호 「연금연계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간에 가입이력 합산을 허용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연금연계법」에 따른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국민연금법」에 신설되었음.⁶⁾

□ 개정안은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연금연계법」에 따른 연계 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당연적용사업자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4)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1998. 12. 31. 공포, 1999. 4. 1. 본조시행>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當然適用事業場”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직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退職年金等受給權者”라 한다)를 제외한다.

5)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부제출, 의안번호 제151070호)」(1998. 5.), 31면.

6)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009. 2. 6. 공포, 2009. 8. 7. 시행>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공적연금 연계 신청 여부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서의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 의무가입’ 등 일반적·보편적 사회보험을 지향하는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시작할 당시에 고려된 ‘공적연금 중복수혜 방지’의 취지는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 대상 직군이 ‘평생직업’이라는 전통적 인식에 기초하였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민간 간 이직 형태가 다변화·유연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최근 동향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각 직역연금에 따라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되어 공적연금의 적용이 배제되는 적용제외자나 무연금자 등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법에서는 「연금연계법」에 따른 연계 신청만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없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데 대한 선호가 크지 아니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개정안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그 사용자가 부담금⁷⁾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고용 여건 등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연금연계법」에 따른 연계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90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일부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등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최소 가입기간은 충족하였으나 그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사각지대의 우려가 있는 일부 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금 연계제도’를 통하여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고,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① 국민연금 미가입, ② 사업장가입(연계 신청), ③ 임의가입 등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고, 연계 신청 시 별다른 제한 조건이 없는 점을

7)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고려할 때 반대의 경우(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자동가입)에
비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일부 퇴직연금등수급권자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 대하여 사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함.

- 아울러,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과 공적연금제도와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하여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바(1998)를 고려할 때,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당연가입자(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연금 중복 수혜의 소지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